

의안번호	제 496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우양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6년 10월 31일

#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우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0월 31일

발의자 : 박우양, 이광희, 이양섭,  
김영주, 박종규, 윤은희,  
이언구

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범조항 변경(안 제10조)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 →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 ”
-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 개정(안 제11조)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삭제에 따라 제11조 조항 후단 삭제

## 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호에 의거 생략

라. 협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함.

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” 를  
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후단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 
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사업)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<u>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<u>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12.30.>

10. “차상위계층“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(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)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### 제3조 삭제 <2015.12.10.>

#### ■ 삭제된 조항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